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4. 19.

통 영 시 (장)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낙시어선으로 경상남도 관할수역에서 낙시어선업을 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그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영업시간의 제한

가. 낙시어선 : 22:00 ~ 익일 03:00

나. 야간 항해장비 미설치 낙시어선 :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기상청 발표 기준)

※ 단, 레이다 등 야간 항해 장비를 설치한 낙시어선은「가」호에도 불구하고 어선검사증서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적용한다.

3. 영업구역의 제한

가. 낚시어선 영업제한 구역

번호	제한(금지)구역	주 소	위 치
1	흑 초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34-36-20N 128-15-65E
2	가동서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1	34-36-45N 128-16-62E
3	내장덕암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5	34-36-15N 128-19-75E
4	외장덕암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8	34-35-35N 128-20-10E
5	좌사리제도 (메주여)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5-1	34-34-46N 128-21-27E
6	좌사리제도 (안제립여, 바깥제립여)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1외1	34-33-08N 128-20-70E
7	갈매기섬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국도 남서 본섬과 분리된 바위)	34-32-4369N 128-26-0277E
8	등가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8외4	34-36-45N 128-35-55E
9	가익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73외4	34-38-42N 128-32-45E
10	작 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산206외1	34-42-12N 128-29-00E
11	장사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4-1외17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길 38-59)	34-42-52N 128-33-29E

※ 단, 상기 가의 영업제한구역 중 11개 도서 주변의 부속섬도 영업 제한구역에 포함하되 가동서, 내장덕암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하절기)는 영업을 허용한다.

나. 선외기 설치어선 중 3톤 미만의 소형낚시어선은 통영시 모든 선착장 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다. 낚시어선업자는 상기 구역에서 낚시를 목적으로 하는 승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영업구역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내(외측한계는 영해)로 하되, 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영해 바깥쪽 해역으로 영업구역이 지정 될 경우 그 해역까지로 한다.

마. 낚시어선업자는 상기 구역 및 문화재 보호법, 자연공원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승객의 안전과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제한

- 낚시어선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또는 면허·허가 받은 어장에 불법으로 부설한 구조물(낚시용 뗏목, ~~가~~두리 ~~배~~ 등)에 승객을 하선시켜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면허·허가 받은 어장에 승객(낚시객)을 하선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어장의 어업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타 안전이 확보 되지않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 장비

- 선박의 유류 배출 방지를 위한 폐유통,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의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쓰레기통, 영업구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거식 간이변기, 일반쓰레기 수거를 위한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쓰레기 규격봉투 구매기준 : 낚시인 5인 기준 1매(20ℓ)

※ 단, 포인트별 5인 미만 하선 시 20ℓ/1매 기준

6. 속력의 제한

○ 낚시어선 속력제한 구역

경상남도 고시 제2017-121호(무역항별 선박속력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통영항 구역내에서는 최대속력 5노트 이하로 운항하여야 한다.

번호	속력제한구역	경 위 도
1	동호만	34-50-30.6N, 128-26-28.1E(동호항 북방파제 남단)에서 34-50-26.2N, 128-26-29.9E(동호항 남방파제 북단)을 연결한 선내 해면
2	도남만	34-49-51N, 128-26-03.8E(도남항 서방파제 북단)에서 34-49-50.9N, 128-26-07.1E(도남항 파제제 서단), 34-49-47.9N, 128-26-10.7E(도남항 파제제 동단)에서 34-49-46.3N, 128-26-13.2E(도남항 동방파제 서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9-51.5N, 128-25-57E(도남만 어선계류장 선착장 끝단)에서 34-49-51.9N, 128-25-58.9E(도남어항 파제제 서단), 34-49-52.1N, 128-26-01.9E(도남어항 파제제 동단)에서 34-49-51.0N, 128-26-03.8E(도남항 서방파제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해면
3	통영운하 (내만포함)	34-50-22.5N, 128-25-39E(동호동 남망산 남서단)과 34-50-00.8N, 128-25-29E(봉평동 북동단)을 연결한 선 이서로부터 34-50-02.4N, 128-24-29E(미수동 북서 돌단부)과 34-50-04.8N, 128-24-29E(당동 남단)을 연결한 선내 수역

7.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 낚시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출항 전 안전 사고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승객 준수사항

-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고 미신고 어선인 경우 승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승객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이하 같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산관계법령으로 금지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기간 및 체장을 준수하여야 하고, 포획 ~~채취~~한 때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하며, 낚시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수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낚시어선의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낚시어선업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선내에서 음주 및 주류반입 등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영업시간 외 항해, 영업구역 외 장소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인명구조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취사, 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하는 행위
-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 2)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다.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낚시어선업자는〔별표1〕에서 정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할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및 통신 장비를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하며, 통신소통이 불가능한 장소에는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항신고 시에는 낚시 지점별 하선인원과 승객의 위치를 어선 출입항(해경파출소 등)신고하여야 한다. 승객을 안내 이후 승객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승객을 다른 시·군의 관할구역으로 안내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고시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분뇨는 바다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및 핸드레일, 조명등,

자기점화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항시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 검사를 받은 규격품이어야 한다.

- 이 법에서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낚시 어선업 관계자(낚시어선업자 및 선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구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낚시 활동 중에 발생한 분변에 대하여는 바다공중화장실 및 육지 화장실 등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낚시어선 신고확인증을(별표2)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미 FDA에서 시행하는 지정해역 위생 정기점검 기간에는 지정해역 내에서 영업을 제한 할 수 있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통영시 고시(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 사항 고시) 및 관련법령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위 낚시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및 제55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개정 고시』(통영시 고시 제2020-1657호)는 폐지한다.

별표 10

낙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설 비
1.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사. 자기점화등(自着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 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낙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낙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	낙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 안전구명설비의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개별 방침에 따른다.

별표 2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 글씨 : 검은색

○ 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 게시판의 부착 장소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승선정원 명
승 객 준 수 사 항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가. 낚시어선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낚시어선에 승선 시 음주 및 주류 반입 등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해, 영업구역 외 지역의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 취사, 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하는 행위
 - 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아. 낚시제한기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 2)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3. 기상 악화 등으로 안전 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금지구역에 하선을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